

<p>○ 專門委員 金宗植 金宗植 專門委員입니다. 서울特別市敎育賞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p> <p>.....</p> <p>(報告)</p> <p>4. 검토의견</p> <p>○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4.10.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p> <p>○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교육상조례 제3조의 시상부문 중에서 초등교육 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유아교육 부문을 유아, 특수교육 부문과 초등교육 부문으로 분리 독립토록 하여 현행 4개 부문에서 5개 부문으로 확대하고 시상인원을 6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고자함 입니다.</p> <p>○ 이는 조기교육과 특수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요구하는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서울 교육상의 각 부문별 균형 있는 시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p> <p>○ 조기교육과 특수교육을 명확히 담당하고 있는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유공자를 발굴하여 표창하므로써 사기진작과 동기 부여로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균형 있는 시상을 도모한다는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p> <p>○ 다만, 시상인원이 6명에서 7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수반되는 포상금의 확보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p> <p>(檢討報告書 一部內容 收錄省略)</p> <p>.....</p> <p>이상으로 서울特別市敎育賞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p> <p>감사합니다.</p> <p>○ 委員長 劉大運 수고하셨습니다.</p> <p>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p> <p>(「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p>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p> <p>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達源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李達源委員 李達源委員입니다.</p> <p>우선 자료 뒷부분의 교육상수상 현황을 보면 95년도에서 96년도로 넘어오면서 교육행정 부분의 수상인원을 1명을 감소시켰는데 이것이 어떤 경위에서인가요? 그리고 지금 다시 부활을 시킨 것 같은데요. 수상인원 중에 교육행정 부분에 대해서 95년도부터 조례개정을 해서 시상을 했는데 96년도에 축소를 한 경위요.</p> <p>○ 企劃管理室長 成耆璇 企劃管理室長이 답변 드리겠습니다.</p> <p>96년도에 추천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내용으로 봐서 적격자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상을 안한 것입니다.</p> <p>○ 李達源委員 그러니까 95년도에 조례개정해서 교육행정 부분에 대해서 시상인원을 도입한 것은 처음 실시되었던 거죠?</p> <p>○ 企劃管理室長 成耆璇 그렇습니다.</p> <p>○ 李達源委員 그런데 어떻게 적격자가 추천되지 않은 거예요?</p> <p>○ 企劃管理室長 成耆璇 추천을 학교 교장이거나 이런 기관에서 추천을 하는데 두어 사람 추천이 되어 왔는데 보니까 과거에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저희가 볼 적에 이런 사람을 시상을 줬다가는 망신당하겠구나 해서 스스로 제외시킨 것입니다.</p> <p>○ 李達源委員 그리고 지금 유아 특수교육 부분을 1명으로 잡아놨는데 제가 보기에 유아 부분하고 특수교육 부분은 분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왜 같이 잡아놨는지 설명을 해 보시죠.</p> <p>○ 初等教育局長 洪貞植 初等教育局長 洪貞植입니다.</p> <p>지금 초등학교나 유치원의 교원수나 학교수에 비해서 특수학교가 아주 적습니다. 또 심지어는 지금까지는 초등교육 부분에 유아교육을 함께 묶어서 상대적으로 볼 때에 사실은 유치원에서 한번도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p> <p>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유아하고, 특수하고 함께 묶어서 한 분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특수학교의 지금 학교수나 교원수에 비해서 별도로 특수학교를 독립하기에는 아직은 좀 미미한 부분이 있다 해서 한데 묶어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p> <p>○ 李達源委員 상에 대한 교육적 효과 이런</p>
---	---